

미주리 침례교 총회 헌법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미주리 침례교 총회"라 칭한다.(이후 총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미주리 침례교들은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상 대명령을 이행하는 교회들로 성장하기 위하여 함께 섬김에 있다.

제 3 조 회의 때와 장소

총회는 실행부가 결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매년 10월이나 11월, 또는 긴급 시에 모인다.

제 4 조 회원자격

총회는 아래의 조항들에 근거하여 소속된 교회들로부터 지명된 메신저들로 구성된다.

제 1 항

총회와 제휴하여 남 침례회 총회의 협동사업에 동참하기 원하는 남 침례교회, 그리고 제 2항에 진술된 자격 사항과 부합되는 침례교회는 교인 100명 당, 또는 그 미만의 경우 한 사람 씩의 메신저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단, 15명 이상의 메신저를 임명할 수는 없다.

제 2 항

1919년 협정에 따라서 1961년 현재로 미주리 침례교에 소속된 다양한 교회들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제 3 항

참석한 교회의 메신저 혹은 메신저들의 총회 회원가입에 이의가 제기되면 문제를 자격심사 위원회에 문의한다. 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후 다음 회기에 총회에 보고하며 그리고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상소가 있을 때 이의가 제기된 메신저 혹은 메신저들에 대하여 총회가 최종결정을 내린다.

제 4 항

본 조항(회원권)에는 총회의 헌법, 규약, 그리고 사업 및 재정 계획과 상반 되거나 남 침례 교인의 신앙, 정체 및 행습을 어기지 않는 한 인종이나 언어, 또는 다른 기관들, 주 총회 지방회들과 제휴 관계를 가진 침례교회들과의 협력을 금하는 것은 전혀 없다.

제 5 조 총회와 교회들과 지방회 사이의 관계

제 1 항

총회의 교리적 지침과 활동은 2000년 8월 14일 채택된 "침례교 신앙과 교훈"(Baptist Faith and Message) 으로 한다. 총회에 소속된 어느 남 침례교회든 역사적 침례 교인의 신앙고백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제 2 항

총회와 교회들과 지방회들 사이의 관계는 친목과 협력이다. 총회는 교회들에게 권위를 절대로 행사할 수 없고,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그들 자유의 행사를 행사하였던 것 같이 교회의 완전한 자치권과 독립에 개입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3 항

총회는 언제라도 회원들의 자격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어느 때든지 교회와의 협력의 지속 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출신 교회의 메신저나 메신저들이 인격의 기본에 의한 자격을 상실 혹은 인격 또는 태도의 이유로 총회에서 고립된 사람들을 메신저로 참여할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

제 1 항

총회의 임원들은 총재, 제1부총재, 제2부총재, 그리고 기록 담당자이다. 이 임원들은 매 연례회의 때 선출한다. 총회 연례회의에서 선출된 임원들은 폐회 때부터 다음 총회의 연례회의 폐회 때까지를 임기로 한다. 단, 기록 담당자는 직분을 담당하는 동안 연례회의 기록 준비에 책임이 있다.

제 2 항

총회의 총재는 연임재로도 선출될 수 있으며 선출된 후임 총재의 임기가 일 년이 지나지 않는 동안에는 재 선출 될 수 없다.

제 3 항

각 임원은 총회에 소속된 교회 회원이어야 한다. 총회가 소유하거나 통제 또는 총회가 직접 지출하는 기관이나 이사회의 유급 피고용인(또한 이러한 유급 피고용인의 배우자) 그리고 총회로부터 보충적 원조를 받는 사람(또한 이러한 사람의 배우자)은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제 4 항

총회의 임원 후보들은 참가자들에 의하여 추천된다. 그리고 임원들은 연례회의 때 등록된 메신저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단 다수결에 의하여 어느 임원이든 선출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더욱이 단일후보가 임원으로 추천될 경우 구두투표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다. 만약 결선 투표가 필요시 1차 투표에서 다수의 투표를 얻은 2사람의 이름만 2차 투표 후보로 추천된다.

제 7 조 임원의 직무

제 1 항

총재의 직무는 총회의 회의, 질서유지, 정당하게 상정된 모든 안건들에 관한 투표를 주재하며 주재한 임원에게 부여된 통상적 직무를 수행한다.

제 2 항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상속순위는 제 1부총재, 제2부총재, 그리고 기록 담당자이다. 총재는 제1부총재나 제2부총재가 어느 개회나 연례회의 주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 항

기록 담당자의 직무는 모든 총회의의 진행기록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발표를 위한 기록들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사회 행정직원의 도움을 받아 기록 담당자는 총회의 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보고 하기위한 통계 자료와 데이터들

수집하고, 분류하고, 도표화하고, 그리고 총회의 연보에 인쇄할 준비를 한다. 이것은 총회의 기록 보충물이거나 Book of Reports에 인쇄물인데 매 연례회의 때 메신저들에게 배부할 것이다.

제 4 항

총회 임원들은 이사회 직무위원으로 회원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임기를 채운다. 총재는 모든 총회 위원회의 투표권이 없는 직무위원으로 역할을 다한다. 단 총재는 총회 지명위원회를 섬길 수 없다.

제 8 조 이사회

제 1 항

총회의 권리능력을 총회 이사회에 위임한다. 이사회는 미주리주 법률에 의하여 유효하게 설립되며 모든 법적요건의 성실한 준수의 책임을 진다. 이 집행 위원회는 총회의 선교, 교육, 그리고 자선 활동을 총괄한다.

제 2 항

가. 이사회는 총회 임원들로 규약의 정의대로 일반회원들과 각 8개 지역 출신의 3명의 회원들로 구성된다. 지역은 소속된 교회들의 거주회원이 최소 16,000이다. 각 추가 10,000명의 거주회원이나 기본 단일 지역에서 16,000 이상 일 때 추가로 1명의 위원을 선출하는데 총 4명의 위원들을 각 주 지역에서 선출한다. 지역의 각 교회는 예비 이사회 회원들의 이름들을 총회 지명위원회 지역 대표자에게 7월 10일 이전에 제출하는 요청을 규약의 정의대로 받는다.

나. 위원들은 3년 임기로 선출된다. 대체로 1/3의 각 지역 위원들이 매년 선출되고 있다. 모든 임기는 예정대로 만료된다. 지역회원은 연임 3년 임기로 일할 수 있지만 2년이 지난 후 재 선출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단 임기가 1년 안에 만료되는 시기에 선출되는 사람은 연임 3년 임기의 자격을 갖는다. 연임 3년 임기로 일하지 않은 지역 회원은 1년이 지난 후 재 선출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소속된 교회출신 사람만이 지역회원으로 주어진 시간에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다. 지역회원이 같은 주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남은 현 총회기간동안 위원회에 남을 수 있다.

다. 위원회는 회원이 연2회 위원회 회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공석을 공포한다.

라. 위원회의 공석이 총회의 연례회의 사이에 발생하게 되면 위원회 회장은 지명위원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지명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지난 위원회로부터 제안 받은 해당지역의 명단에서 공석을 다음 총회 연례회의 전에 채운다.

마. 이사회 또는 총회가 소유하거나 통제 또는 총회가 직접 지출하는 기관의 유급 피고용인은(또한 이러한 유급 피고용인의 배우자) 위원회 회원의 자격이 피고용인 동안은 없다.

제 3 항

가. 총회 임원들은 위원회 회원들과 같이 무보수로 일하는데 다음과 같다. 총재는 회장과 같이 제1부총재는 제1부회장과 같이, 제2부총재는 제2부회장과 같이, 기록 담당자는 사무국장 같이, 위원회는 모든 규칙들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채택한다. 자체 또는 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위원회(committee)를 설립 한다. 그리고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가끔 위원회는 일을 총회유권자들에게 보고한다.

나. 위원회는 모든 영향력과 권한을 총회 연례회의 동안 총회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갖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총회의 헌법, 규약, 그리고 사무와 재무계획을 위배하거나 또는 인정한 남 침례 신앙, 정치, 그리고 의식을 어기기 위하여 총회의 활동을 반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총회가 고려하고 채택을 하기위하여 위원회는 총회 연례회의 때 다음해 협동프로그램(Cooperative Program) 예산할당을 제출하는데 총회와 남 침례교 총회의 목적을 포함한다. 모든 총회에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목적에 따라 성실히 분배하는데 예산 집행 계획에 포함된 각 목적의 퍼센티지나 고정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분배는 총회의 사무와 재무계획을 따른다.

라.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사무들을 총감독하는 사무총장의 보수를 채택하고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보수를 채택하고 결정한다.

마. 제9조항과 일치하는 가운데 위원회는 총회가 전체 또는 부분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교육과 자선기관을 감독한다. 모든 기관들의 상태와 필요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모든 기금운동 준비를 승인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계몽운동에 관하여 이 기관들의 청구와 필요를 수행한다.

바. 위원회의 회계담당자는 사무총장이다. 총회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모든 기금을 받고, 유지하며, 그리고 지출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회계담당자는 정당한 재무기록들을 유지하는데 기록들은 감사를 받는다. 위원회는 긴밀한 유대를 회계담당자에게 제공하는데 총회와 위원회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 9 조 기관

제 1 항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교육, 자선, 또는 다른 기관들을 총회는 소유, 관리, 또는 언약 관계 안에서 기여한다.

제 2 항

모든 헌장과 헌장 수정은 이사회에 추천으로 총회가 승인을 한다.

제 3 항

총회는 각 기관의 관리위원회(Governing Board) 회원들을 선출 또는 승인한다. 각 위원회는 기관의 내부관리에 모든 권위를 가진다. 그러나 총회 연례회의 때 관리와 재무 상황을 사무와 재무계획에 따라서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 4 항

기관이 총회가 책임을 질 돈을 빌리기 전에 공식적인 승인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확보한다.

제 10 조 위원회

제 1 항

Committee on Convention Committees는 8인으로 구성되는데 - 각 지역 출신 1인 - 적어도 총회 연례회의 90일전 총재에 의하여 임명된다. 위원회 회원의 이름들은 미주리 침례회 뉴스저널(News Journal)에 발표한다. 이 위원회는 총회의 모든 상무위원회를 지명위원회만 제외하고 총회 규약의 조항에 따라 추천한다.

제 2 항

지명위원회는 24인의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3년 임기를 채운다. 그 중에 8명은 각 연례회의에서 다른 총회 임원들과 총회에서 선출한 협의를 거쳐 총재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8개 지리적인 지역출신 3명의 멤버들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1/2의 위원회는 일반인들이며 그 나머지는 목사들이다. 이 위원회는 이사회, 각 기관 관리위원회, 그리고 위임된 임무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지명한다. 지명위원회의 지역 대표들은 이사회를 위해 교회들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총회가 때때로 채택하는 대로 규칙 및 순서에 의하여 처리된다. 회원이 연속 2회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이며 또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원이 선출된 지리적인 지역에서 이주했을 때, 지명 위원회는 어느 공석이든 그것을 공표한다. 총회 회장은 다음 총회 연례회의 때까지 공석을 채울 사람을 임명한다. 연례회의 때에 지위의 남은 임기를 위해 지위가 채워진다.

제 3 항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회원 수로 이루어진 Teller Committee는 총재에 의하여 총회 연례회의 최소 30일 전에 설립된다. 이 위원회는 주재하는 임원을 필요시 돕는데 구두, 거수, 그리고 기립에 의한 투표나 투표 총수를 적으며, 투표용지를 수거하며, 결과를 표로 만들며, 그리고 결과들을 주재임원에게 보고한다.

제 4 항

총회는 규약에서 허가하는 범위에서 다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II 조 개정안

본 헌법은 2/3의 메신저들의 투표에 의하여 정기적인 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개정안을 이전 연례회의 때 제출된 적이 있을 경우이며 더 나아가서 제 5조항은 개정안에 포함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구체화 하고 있는 원칙을 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동의와 제청으로 총회의 규약에 제정된 것과 같이 개정안의 심사와 심문을 하고 다음 총회 연례회의 때 보고와 추천을 위하여 Committee on Continuing Review에 일임한다.